

고용 평등은 법입니다

연방 재정 지원 대상자로서 뉴욕주 노동부(NYS DOL)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차별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1) 미국내의 어떠한 개인을 막론하고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 장애, 정치적 소속이나 견해, 2) 1998년 제정된 노동력 투자법(WIA) 제1장에 의거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 3) 수혜자의 시민권 소지/미국내의 합법적 이민자 고용 허가 소지 여부, 또는, 4) WIA 제1장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 여부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1) WIA 제1장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가자나 대상자의 결정, 2) 해당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한 기회 제공 또는 해당자 처우, 3) 해당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운영이나 관련 고용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

WIA 제1장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간주될 경우, 해당 위반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편사항을 다음으로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Ms. Denise Pilgrim
Name of Equal Opportunity Officer

NYC Department of Youth & Community Development
Name of Organization

156 William Street (rm:266) , New York, NY 10038
Address

(212) 442-6022 (212) 442-7955
Telephone Number Fax

dmilgrim@dycd.nyc.gov
E-mail Address

전화

Director

Division of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고용 평등 추진 사업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뉴욕주 노동부)
State Office Campus, Building 12, Room 540
Albany, New York 12240

전화: (518) 457-1984
(TDD) 1-800-662-1220
(음성사서함) 1-800-421-1220

또는, 다음으로 불편사항을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Director

Civil Rights Center (CRC)
U.S. Department of Labor(미노동부)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N-4123
Washington, D.C. 20210

재정 지원 대상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서면 결과 통지서(Notice of Final Action)를 수령하거나 90일이 경과될 때(두 가지 중 빠른 경우)까지 기다린 후에 Civil Rights Center(상기 주소 참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90일이 경과될 때까지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CRC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9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즉, 해당 기관에 신고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CRC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항에 대한 서면 결과 통지서를 받았으나 결과나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CRC에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CRC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DEOD 310K (9/13)